##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64 발의연월일: 2024. 9. 19.

발 의 자:김태년·김영배·김준형

김태선 • 권칠승 • 한민수

김영진 • 박홍배 • 정준호

염태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997년 제정되어,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절차에서의 특례와 피해자를 위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함으로써 파괴된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본 법이 처음 시행된지 26년이 경과하여 '건강한 가정'과 '가족'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변화한바, 가정의 안정을 우선 시하였던 과거와 달리 대다수의 현대인은 개인의 인권 보호를 더 중시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가정의 의미를 전통적 혼인관계에 한정하기보다는, 민법상 약혼관계는 물론 최근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결혼 전 동거관계나 결혼 없이 지속하는 연애관계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본 법의 목적을 다시 설정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정의 모습을 포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입법목적에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자 함을 삭제하고 피해자와 가족 및 교제관계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함(안 제1조).
- 나. 가정구성원에 교제(交際)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마목 신설)
- 다.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및 제9조제2항제 2호 삭제).
- 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도록 함(제7조 후단 삭제).
- 마.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삭제함(제9조의2 삭제).
- 바.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과 함께 강압적인 통제행위 이력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함(안 제19조 및 제21조).

#### 법률 제 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 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를 "폭력범죄로 침해된 피 해자와 가족 및 교제관계 구성원의"로 한다.

제2조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약혼관계 혹은 약혼관계에 준하는 반려(伴侶)관계에 이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서로 사적으로 친밀하게 교제(交際)하는 관 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260조제3항, 제283조제3항, 제312조제2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

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 중 "동기·원인 및 실태"를 "동기·원인·실태 및 강압적인 통제행위 이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동기·원인 및 실태"를 "동기·원인·실태 및 강압적 인 통제행위 이력"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의사불벌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	제1조(목적)
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	
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	
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u>가정폭력</u>	<u>폭력범죄</u>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로 침해된 피해자와 가족 및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	교제관계 구성원의
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	
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2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마. 약혼관계 혹은 약혼관계
	에 준하는 반려(伴侶)관계
	에 이르는 것을 염두에 두
	고 서로 사적으로 친밀하
	게 교제(交際)하는 관계에

3. ~ 8. (생 략)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략) <신 설>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 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u>이 경우</u>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 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생 략)
  - 항을 적용할 수 있다.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 8. (현행과 같음)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260조제3항, 제283 조제3항, 제312조제2항 및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 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명 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 <후단 삭 제>

-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 ②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 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 된----

-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 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 소된 경우
-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제19조(조사·심리의 방향)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에는 의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그 밖의 가정구성원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

/ x ] - 1] \

<삭 제>

<삭 제>

<삭 제>

제19조(조사·심리의 방향) ----

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명령 등) ① 판사는 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審問)이나 그들의 정신·심리상태,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② (생략)

<u>인·실태 및 강압적인 통제행</u>	
위 이력	
제21조(조사명령 등) ①	
<u>동기 ·</u>	
원인・실태 및 강압적인 통제	
행위 이력	
② (현행과 같음)	